

朝鮮後期 對中 書籍輸入政策 研究

姜 惠 英*

〈目 次〉

I. 緒 言

III. 輸入의 類型

II. 書籍輸入의 背景

IV. 結 語

I. 緒 言

韓中關係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中國文化가 끊임없이 韓半島에 영향을 미쳐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특히 韓半島에 크게 영향을 미친 中國의 文化는 中國을 통한 佛敎文化와 儒學, 科擧制와 敎育制度를 포함한 政治制度 그리고 生活倫理를 내용으로 하는 儒敎文化라 할 수 있다. 더욱이 儒敎國家로서 출발한 朝鮮朝에 있어서 儒敎文化의 본원인 中國은 文士들에게 文化의 供給源으로 作用하여 왔던 것이다.

文化媒體로서 書冊의 輸入은 어떤 時代에서도 불가피한 문제였으나 특히 儒敎國家를 지향하던 朝鮮朝에서는 건국初부터 古例의 研究, 施政上의 參考 및 儒學者의 官僚의 養成을 위해서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壬辰倭亂 以後의 朝鮮朝 後期는 燕山朝의 書籍廢害와 亂中에 灰燼된 서적이 많아 서적수집의 필요성이 國內外를 막론하고 시급했던 시기로 시작되었다.

또한 고질적인 慕華思想과 함께 中國을 宗主國으로 淸日戰爭(1894年)직전까지 事大를 행해왔으므로 제반文物의 輸入處는 오직 中國이 있을 뿐이었다. 儒敎文化圈의 宗主國이요, 당시로서는 先進國이었던 中國에만 의존한 것은

* 全北大學校 人文大學 圖書館學科

2 도서관학논경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있던 朝鮮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으나 他文化의 수용에는 제한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일변도의 문화적 영향하에서 형성된 朝鮮朝後期の 社會的, 文化的 性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文物의 輸入 中, 書籍 輸入의 類型이 本質적으로 이루어졌어야하나 아직 이 부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¹⁾

이에 本稿에서는 韓中書籍交流史研究에 先行되는 문제로서 朝鮮朝後期の 書籍輸入類型과 그에 대한 문제를 推究하여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매우 광범하고 산만한 자료를 섭렵하고 정리하여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나 그다지 용이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II. 書籍輸入의 背景

國家制度의 確立과 施政의 參考資料로서, 또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教育資料로서 서적의 중요성은 古代부터 인식되어 있었다.

書冊의 중요성에 대해 <增補文獻備考> 藝文考의 編者는 “問의 外史는 三皇五帝의 글[書]을 관장함으로써 이틀이 사방에 펼쳐있고 楚의 倚相은 <三墳>, <五典>, <九丘>, <八索>의 글을 읽음으로써 王의 左史가 되었다.” 이것은 옛날의 帝王이 天下와 국가를 다스리는 도구였다. 이로써 번성하던 시대 王朝의 職務와 學士의 誦習은 詩書·六藝의 글에 지나지 않았으나 정치가 빛나고 훌륭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孔子가 말하기를 夏나라의 禮는 내가 말할 수 있으나 杞나라에서는 고증할 수 없고 殷나라의 禮는 내가 말할 수 있으나 宋나라에서는 그것을 考證할 수가 없으니 이는 文獻이 부족한

(1) 이에 대한 先行研究로

鄭亨恩, “朝鮮前期의 書籍蒐集政策: 中宗後代를 中心으로,” 圖書館學會誌, 第3號, 1968. pp. 25—45.

李存熙, “朝鮮前期의 對明 書籍貿易,” 農壇學報, 第44號, 1978. 10. pp. 55—78.

朴尚均, “朝鮮社會의 圖書流通에 대한 考察: 開化期 「冊居間」을 中心으로,” 論文集(강남사회복지학교), 第8輯, 1980. pp. 239—277.

藤塚鄰, “李朝의 學人と 乾隆文化,” 朝鮮支那文化の研究(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第二部論叢), 第一輯, 昭和四年, pp. 283—332 등이 있다.

때문이다. 문헌이 부족하면 나로서도 능히 考證할 수 있겠다 하였으니 文獻이 부족하면 비록 孔夫子같은 하늘이 낸 睿智의 聖人으로서도 옛 사람의 言行을 고증하여 밝힐 수 없으므로 大雅처럼 빛나는것도 資料로 삼지 못하고 마침내 杞나라와 宋나라의 것과 같이 되고 말 것이니 어찌 개탄하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聖帝와 明王은 經術을 숭상함으로써 나라가 발연히 興하고 暴君과 어두운 임금은 그 典籍을 버림으로써 그의 패망이 눈앞에 닥치게 된다. (2)

이처럼 천명된 書冊의 가치인식과 함께 당시 先進國이었던 中國의 文化圈속에서 中國 古代의 制度를 政治理想으로 삼고 先進文化를 憧憬한 文化事大(3)를 행해 왔던 朝鮮朝에서 중국의 서적을 수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중국과의 書冊貿易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치 않으나 漢四郡 설치 이후 그들의 書冊이 전해졌을 것은 분명하며 <後周書> 卷 49, 列傳 41, 異域上 高麗條에 의하면 高句麗 書籍으로 <五經>, <三史>, <三國志>, <晉陽秋>가 있음을 미루어 이미 三國時代 이래 書冊무역이 전개되었으며 또한 高麗시대에는 宋의 蘇軾이 3차례에 걸쳐 “論高麗買書利害劄子”를 올려 貿易을 반대하고(4) 朝貢使節을 꺼려하였으나 麗宋貿易이 南宋代에도 盛하며 특히 宋商이 高麗에 오는 일이 매우 빈번하였던 사실(5)에서 서책무역의 활발한 모습을 쉽게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서책무역은 抑佛崇儒政策을 정치지도이념으로 표방한 朝鮮朝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건국 초기의 古制研究와 文物制度의 再整備에 대한 參考資料로서, 또한 儒學者 養成의 教育資料로서 중국의 서적이 필요할 때와 초기이후의 戰亂이나 內亂 혹은 화재 등으로 保存서적이 散失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의 긴급 복구책으로 서적수입의 필요성이 야기된다. 서적수입을 해야 할때 그 대상국은 주로 中國이었으며 읽을만한 책은 모두 中原

(2) 국역중보문헌비고, 예문고,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0. pp.15-16.

(3) 李存熙, “朝鮮前期의 對明 書籍貿易,” 震檀學報, 44號, 1978. 10. p. 55.

(4) 上揭論文, p. 60.

(5)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1. p. 4.

4 도서관학논집

에서 구해와야 한다⁽⁶⁾는 생각하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서적을 수집하기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 두 나라 체도의 類似性, 文字의 同一性에 따른 중국서적의 우리나라에서의 효용성의 일치 등으로 말미암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국내에서 수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성을 차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내에 없는 서적을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집하는 쪽이 오히려 훨씬 중요시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⁷⁾ 이런 배경하에서 朝鮮時代에는 주로 중국의 서적이 많이 수입되었고, 中期에 이르러서야 燕京 使臣에 의한 서양학술서 전래가 가능해졌다.

III. 輸入의 類型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서적을 수입할 수 있는 방법에는 官貿易과 私貿易 그리고 寄贈의 세가지가 있었다. 이는 朝鮮과 中國과의 外交政策에 따라 나타나는 類型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중에서 寄贈은 朝貢에 의한 賞賜品이거나 奏請에 의한 寄贈의 경우이므로 이는 官貿易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官貿易

朝鮮朝에 있어서 韓中間에 추진된 官貿易을 論함에는 兩國間의 外交政策에 대한 考察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朝鮮의 外交政策은 事大交鄰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하여 形式的·政治的 從屬關係에서는 事大를 통하여 使臣은 반드시 朝貢(物)을 가지고 가는데 대하여, 중국은 반드시 賞賜(品)을 내렸는데 朝貢과 賞賜, 이것이 일종의 官貿易인 것은 상식으로 되어 있다.⁽⁸⁾ 일반적으로 韓中間의 交易은 使行의 來往과 연관되어 행해지며 대부분의 경

(6) 中宗實錄, 卷 99. 中宗 37年 9月 辛未條, 「我國必於中原 求買書籍。」

(7) 鄭亨恩, 前揭論文, p.35.

(8) 李仁榮, 國史要論 서울, 民敎社, 1956. p.124.

鄭亨恩, 朝鮮時代書誌史研究, 서울, 韓國研究院, 1983, pp.61—62 再引用.

우 使臣은 中國에 머무는 동안 직접 그곳의 高明한 학자들과 交遊하며 그들의 지식을 흡수하거나 그곳 사정을 見聞·情探해 오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서적을 購入 또는 受贈해 오는 간접적인 방법⁽⁹⁾으로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문물제도를 수입하는 임무를 겸대하였으므로 事大使臣은 唯一한 情報網으로서 심대한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음과 동시에 文化導入의 尖兵으로서의 역할을 결코 看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문화도입의 가장 직접적인 것이 使行의 北京貿易이다.⁽¹⁰⁾ 이런 뜻에서 본다면 의례적 일반사행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서적의 購求, 文物制度의 情探이 使行의 주요한 임무로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¹¹⁾

朝鮮朝後期에 있어서 使臣에 의한 公的 書籍蒐集은 戰亂의 兵禍를 겪은 직후나 燕山君時代에 발생된 書籍禍와 같은 文化的 위축기를 겪은 후나, 內亂 혹은 洪水나 火災 等 天災로 인한 서적손실량이 많아 그 부족을 충당해야 할 때 국내수집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독려로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例로 壬辰亂 직후인 宣祖 33年 6月 戊寅條에 의하면 冬至使로 北京에 다녀온 李好閔은 미리 經筵進講의 서적이 散亂되어 完帙이 아닌 것이 많음을 보고 북경의 玉河館에 유숙할 때 書狀官 安宗祿과 의논하여 여비를 모아 詩經, 書經, 周易, 禮記, 論語, 孟子, 中庸, 大學, 中庸或問, 大學或問, 君臣圖鑑 등 총 75권을 구입하여 進上하여⁽¹²⁾ 선조로부터 嘉賞을 받았다. 또한 宣祖 33年(1600)에는 奏聞使 南以信은 明나라 使臣으로 갔다 오면서 書狀官 曹偉과 의논하여 漢書平林 50卷과 史記評林 30卷을 들여 오는⁽¹³⁾ 등 兵禍로 인한 國內의 書籍不足을 충당하는데에 자발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외에도 宣祖는 豪雨로 인해 弘文館에 收藏된 서적이 포유 산일되었을 때 通報의 擘冊에 付籤하여 赴京使臣에게 그 가격을 優給하여 賞을 걸고 極力買

(9) 鄭亨愚, 朝鮮時代書誌史研究, p. 171.

(10) 金龜七, “燕行小攷: 朝中交涉史의 一節,” 歷史學報, 12輯, 1960. 5. p. 49.

(11) 鄭亨愚, 朝鮮時代書誌史研究, p. 178.

(12) 宣祖實錄, 卷 126. 宣祖 33年 6月 戊寅條.

(13) 同上, 卷 127. 宣祖 33年 7月 辛酉條. 「奏聞使南以信啓曰一今始入京, 且臣等一行盤纏用餘銀兩不多, 遺爲糞來, 亦似零星, 與書狀官 曹偉相議, 換得 漢書平林五十本, 史記平林三十本 以來敢此筭啓.」

6 도서관학논집

來해 오도록⁽¹⁴⁾ 조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國家的 次元에서의 貿易 政策에 따라 使行員들의 書籍購入이 점차 盛해졌다고 볼 수 있다.

中國書冊의 필요성은 소장서적의 긴급 보충이 요구될 때 외에 施政의 參考를 위해서 수시로 要請되었으며, 仁祖 26年(1648)에 禮曹에서 杜氏通典과 文獻通考 등의 책은 儀文의 考閱에 도움이 될 것이니 戶曹로 하여금 節使가 가는 處에 돈을 주어 책을 사오도록 奏請하여 購入한 것⁽¹⁵⁾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使行의 來往과 연관되어 행해지던 韓中間의 交易 중 公認된 官貿易과 私貿易은 朝貢關係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었다. 당시 對中貿易에는 <貢使及夷商等 不得受買兵器·史書·一統志·地理圖及磁硝·牛角·紬緞·絲斤等物·及携帶內地人口·潛運造船大木·釘鐵·油麻·米穀出境·伴送人員·亦不得將例禁之物>⁽¹⁶⁾과 같이 명백한 한계를 그어두고 있어 史書, 一統志, 地理圖와 같은 書籍類는 流出이 禁止되고 있었다. 朝鮮前期 이래 주로 注文되고 있었으나 실제로 所期의 成果를 이루지 못한 것 같은⁽¹⁷⁾ 資治通鑑을 비롯한 中國歷代의 治亂의 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史書類의 蒐集은 공공연한 官貿易의 형태로서는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密貿易의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올바른 政治를 위해서 훌륭한 龜鑑書가 필요했던 朝鮮으로서는 이 무역의 한계에 벗어나 顯宗 11年(1670)에는 史書의 禁을 범하고 赴京使 閔鼎重의 下役 梁廷燦이 몰래 通鑑을 가져 오다가 들켜서 문제가 되었고 肅宗 3年(1677)에는 地圖의 禁을 범하고 使臣 吳挺緯의 夥內 愼行建이 各省의 地圖를 숨겨 가지고 오다가 鳳城章京의 搜檢에 顯露되어서 난처한 사태를 빚어낸 일이 있었고 또 肅宗 17年(1691)에는 年貢員役 張燦이 一統志를 가지고 오던 사건이 있었던 것⁽¹⁸⁾으로 이는 모두 國禁을 범하면서까지 書籍을 구입해 오고자했던 實例이다.

(14) 同上, 卷 163. 宣祖 36年 6月 壬辰, 癸巳.

(15) 增補文獻備考, 卷 242. 藝文考 1. 歷代書籍條. 「仁祖二十六年 禮曹啓杜氏通典文獻通考等書 甚有裨於儀文考閱請令戶曹給價於節使之行 從便買來許之.」

(16) 欽定大清會典, 卷 39. 金聖七. “燕行小攷,” p. 34. 再引用.

(17) 李存熙, 前揭書, p. 64.

(18) 增補文獻備考, 卷 175.

특히 正祖朝에 이르러서 對中 書籍蒐集運動이 활발해졌다. 서적을 尊重하여 東宮시절부터 서적수집에 주력하였던 正祖는 即位年(1776)初에 副使 徐浩修에 命하여 古今圖書集成 10,000卷 5,200冊을 中國으로 부터 輸入해 오는데⁽¹⁹⁾ 한편 唐宋故事를 본따서 친히 <訪書錄> 2卷을 編撰하여 두고 內閣 諸臣들의 購買에 參酌하도록 했다.⁽²⁰⁾ <訪書錄>은 우리나라에 輸入되지 않은 中國書籍을 輸入함에 참고하기 위하여 그 書名 卷冊數 등의 내용을 적어 놓은 일종의 <書籍輸入指針書>였을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²¹⁾ 이러한 수입정책하에 正祖 2年(1778)에는 書狀官 沈念祖가 納蘭成德編의 通志堂經解 1775卷 500冊을 購入해 왔다.⁽²²⁾

正祖의 中國書籍 및 文物制度의 수입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당시 使行員들이 北京을 往來할 때 그들은 주로 演義小說 특히 당시 中國에서 盛하였던 三國志演義와 水滸傳을 비롯한 雜書類를 도입하였으며, 또한 天主教의 傳來가 유행되고 있었다. 正祖는 朱子學이 아닌 것을 邪學으로 보고 文風의 醇正化를 기한다는 이유로 稗官小說類의 雜書와 經書를 臥看하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臥看에 편리한 唐板本은 비록 經書類라 할지라도 輸入을 엄금하였다.⁽²³⁾ 또한 正祖 9年(1785)에는 西學을 邪教로 규정하여 禁하고 邪學 즉, 天主教가 유행하는 까닭은 正學 즉, 朱子學이 禪明되지 못한데에 그 원인이 있으며 正學을 禪明하는 길은 朱子學을 尊崇함에 있다⁽²⁴⁾고 보고 使行의 책임자인 正使에게 孔子世系 및 기타 孔子에 대해서 考據할 수 있는 古文蹟을 留意해서 購得해 오도록⁽²⁵⁾ 특별히 당부하는 한편

(19) 正祖實錄, 卷 11. 正祖 5年 6月 庚子條, 「夫教統 規模寢廢 丙申初載 首先購求圖書集成五千餘卷于燕貳.」

(20) 同上條, 「又啟唐宋故事 撰訪書錄二卷 內閣諸臣 按而購買.」

(21) 鄭亨愚, 朝鮮時代書誌史研究, p.177.

(22) 李相玉, 「近代 清朝考證學이 朝鮮王朝에 미친 影響考: 清代 學術書籍의 移入을 中心으로,」 國會圖書館報, 65권, 1970. 4월, p.55.

(23) 弘齊全書, 卷 165. 日得錄 文學 5. 「或言燕肆買賣書之禁 蓋爲稗官小說 蟲人心術之類 如經傳子史之裨益之教者 不宜混禁予意殊不然 我東曷嘗無經傳板刻 特以其卷帙廣大 不便臥看 故邇來儲蓄家 必求唐本甚至板有袖珍 床有臥看 即此一事 便是侮經 侮經之弊 必入於異端曲學 雖欲不禁得乎.」

(24) 鄭亨愚, 朝鮮時代書誌史研究, p.181.

(25) 正祖實錄, 卷 36. 正祖 16年 10月 丙戌條, 「近日 孔聖後裔之收錄 實出尊崇賢之意 孔子世系及其他古蹟之何以考據者留心購得.」

關里志, 關里文獻考 등의 서적 및 聖廟圖, 孔氏碑本 등 孔子關係 문헌을 구입해 온 譯官에게는 施賞하게 하였다.⁽²⁶⁾

이와같은 사실에서 正祖의 朱子學 尊重思想이 書籍輸入政策에 까지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書籍輸入政策하에서도 赴燕使行員들 가운데는 北京의 天主堂을 방문하여 筆談으로 交流하여 그들로 부터 天主書籍과 西洋科學機器를 기증받기도 하고 北京의 書店街였던 琉璃廠書肆를 통해 書籍을 購入하거나 淸朝學人들과의 學的 交驛이 활발하여 禁物인 淸文集, 稗官雜書類 및 西洋書의 流入은 그치지 않았다. 燕京雜書의 賀來問題는 文體反正과 邪學斥決의 방편으로 더욱 엄금되어 書籍의 公的 수입이 전면적으로 봉쇄되기도 했다. 이는 純祖 8年(1808) 3月 26日 “使行書冊의 購來는 禁令으로 인해 正經正史도 오랫동안 구하지 못했으므로 이번 使行부터는 正經正史 및 先輩醇儒文集은 許可하고 異端雜書와 稗乘小說은 先朝法令에 의해 禁하도록” 정하는 南公轍의 奏請⁽²⁷⁾에서 그 경과를 쉽게 알 수 있다.

燕賀書의 國禁措置가 다소 완화되어 朱子學 관계 서적을 비롯하여 經傳史記類에 한해 수입이 가능해지게 되자 道光 9年(1829) 廣東에서 刊行된 阮元의 皇淸經解 183部 1400卷 360冊이 譯官 崔昌淳에 의해 道光 14年(1834)인 純祖 34년에 구입되어⁽²⁸⁾ 淸代의 考證學이 비로소 流入될 수 있었다.

이렇게 使行貿易이라는 제한된 통로로 이루어져 왔던 서적의 公的輸入은 朝鮮後期를 열었던 戰禍의 복구책으로 시작되어 면면히 요구된 施政의 참고 자료로서 史書 및 經書의 부단한 수입으로 일관되었었다. 그러나 天主教를 중시한 西洋學問의 도입과 함께 稗官小說類의 流入은 中國보다 더 朱子學을

(26) 同上, 卷 44. 正祖 20年 3月, 己未條. 「有譯官購關里志關里文獻考等書及聖廟圖孔氏碑本於燕中以來者 命賞加.」

(27) 純祖實錄, 卷 11. 純祖 8年 3月, 壬戌條. 「吏曹判書南公轍…啓言 使行書冊之購來 自有禁令 並與正經正史 而久不出來昔日聖教 出於稗官雜說之嚴禁 而並與經史而始合勿爲購來 昨冬既奉下教 自今行 正經正史及先輩醇儒文集等書 許其出來 異端雜書稗乘小說 依先朝法令禁之 以爲區別 信令之道 請者爲式 從之.」

(28) 日省錄, 純宗 甲午年 7月 29日條. 「[7月 29日壬辰, 先是譯院官生樹淳, 道光 9年 所刊阮元 皇淸經解 1百83部 1400卷 共 360冊 購來 請上納從之 待教金學生言 使司譯院 優加酬賞.]」

尊崇하면서 中國文化外的 外來文化도입에 폐쇄적이었던 朝鮮文士들의 반발로 雜書라는 이유로 禁止되어 公的 輸入이 密輸入으로 變換되는 과정을 겪기도 하였다.

이렇게 使行貿易이라는 제한된 통로로 이루어지던 서적의 수입은 高宗 光武元年(1897) 淸國의 屬國이 아님을 선포하기까지 年年歲歲 北京 使臣行次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2. 賜 予

이는 公的 寄贈에 해당하는 것으로 明·淸의 皇帝가 下賜하는 경우이다. 事大단이 韓中間의 外交關係였던 당시의 官貿易에는 <我國所無書冊 自冬至使之行 別買可也>⁽²⁹⁾에서와 같이 <別買>라는 형식의 상례적이 아닌 특별무역이 있었다. 일반적인 官貿易은 聖節使, 正朝使(賀正使), 冬至使 및 각종의 謝恩使, 奏請使를 비롯한 기타 慶事에 당하여 中國에 파견하는 사절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에 반해 <馳奏天朝 以講秘籍>,⁽³⁰⁾ <書冊奏請使>⁽³¹⁾라 하듯 官貿易에는 書冊奏請만을 위한 <書冊奏請使>라는 단일 사명을 띤 특별사절이 파견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書籍別買> 즉 寄贈에 해당하는 것⁽³²⁾으로 中國皇帝의 特別 下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進獻品에 대한 贈禮로 <賜> 또는 <特賜>로 내려지는 書冊이 있다. 당시 교역상대국이었던 明은 宋·元의 폐쇄성 경향을 계승하여 國民의 出國禁止, 私貿易禁止, 朝貢制度에 의한 交易, 文化交流 및 人的往來의 制限을 하였으며 또한 淸도 마찬가지로 朝貢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었으므로⁽³³⁾ 書冊의 下賜 역시 公的 輸入에 해당될 것이지만 書冊價의 직접적인 지불없이 朝貢에 대한 보답품목 중의 서책에 대해서는 受贈으로 간주할 수 있다.

(29) 中宗實錄, 卷 95, 中宗 36年 6月 丁丑條.

(30) 同上, 卷 23, 中宗 10年 11月 甲申條.

(31) 同上, 卷 95, 中宗 36年 7月 丙戌條.

(32) 鄭亨恩, 朝鮮前期의 書籍蒐集政策, p. 39.

(33) 全海宗, 前掲書, p. 22.

원래 중국이 贈禮로 書冊을 많이 사용한 것은 李好閔의 〈華人送禮 多用書冊, 書, 畫, 香, 茶 等〉⁽³⁴⁾에서 알 수 있으며 중국황제의 賜書에 대한 例를 「增補文獻備考 藝文考 歷代書籍條에서 찾아보면 宣祖 36年(1603)에 金劬이 〈大學衍義〉 1部를 下賜받았고, 숙종 39年(1713) 使臣 金昌集과 尹趾仁 등이 燕京에서 돌아올 때 〈全唐詩〉, 〈古文淵鑑〉, 〈佩文韻府〉 등 모두 300餘冊을 가져 왔으며 그 답례로 우리나라의 詩文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景宗 3年(1723)에 사신 密昌君 楸와 徐命均 등이 〈周易折中〉과 〈朱子全書〉 등을 가져왔으며, 英祖 5年(1729)에는 〈康熙字典〉, 〈性理精義〉, 〈詩經〉, 〈傳毅彙纂〉, 〈音韻圖微〉 등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황제가 특별히 서책을 賜予한 異例로써 寄贈에 屬함은 명백하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왕실로 부터 서책을 기증받는 방법은 대개의 경우 필요한 서적을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서적을 요청함에 있어서는 어떤 형식으로나마 그에 상응하는 代價를 지불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에서 서적을 중국으로 부터 수증하는 것은 彼我 양국간의 전통적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된 官貿易이었다.⁽³⁵⁾ 官貿易 性格을 띤 公的 受贈의 書冊 수량은 사행의 횟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조선후기의 중국의 사행 횟수는 임진年과 정유年의 왜란 직후인 宣祖 32年(1599)부터 光武元年(1897) 淸國의 屬國이 아님을 선포하기 까지 무려 298年 동안 節使와 曆行의 내년 2회이상의 정례적인 사행횟수만으로도 최소 596회 이상의 다수에 달하게 된다. 그외에 別使, 養容行 等 임시의 사행이 빈번하였음을 고려할 때 使臣을 통해서 受贈한 서적의 수량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되며, 賜予 또한 對中國 書籍輸入의 중요한 방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私貿易

중국으로 부터 서적을 수집하는 또 다른 방편으로 私的 蒐集 즉 私貿易을

(34) 五峯集, 卷 8. 「記跋唐人有畫屏跋」, 丸龜龜作, “朝鮮宣祖末年の書籍蒐集と印出,” 稻葉博士 遺傳紀念朝鮮史論叢, 1938. p. 625. 再引用.

(35) 鄭亨愷, 朝鮮時代書誌史研究, p. 65.

들 수 있다. 私貿易이란 官府의 허가하에 일반 상인을 상대로 거래하는 순수한 형태의 무역이다.

서적수집장에서 私貿易은 서적수집을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써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私貿易과 순수한 개인적인 私貿易의 두가지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³⁶⁾ 이러한 私貿易도 빈번히 중국으로 파견되는 使臣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入燕 使臣들이 北京에 滯留하는 日字는 明代에는 40日로 制限되었으나 清代에는 定限이 없었으며 약 60日까지 滯在할 수 있었다. 使行員들은 公的인 활동 외에 私的으로 中國의 學者들과 접촉하며 書肆와 名所 古蹟을 방문할⁽³⁷⁾ 수 있었으므로 譯官 및 수행원들은 직접 그곳의 高名한 학자들과 交遊하며 그들의 지식을 섭취하거나 그곳의 사정을 見聞, 情探해오는 한편, 서적을 수집해 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했다.⁽³⁸⁾

이 중에서도 國家的 次元에서 公認 내지 委任된 私貿易은 赴燕 譯官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光海君 10年(1618)에 許筠은 譯官들로 하여금 各自 書冊을 携來 들어오게 하고는 이를 전부 購수하여 자기 것으로 삼았다하여 원성을 들었으며⁽³⁹⁾ 正祖는 文風의 醇正化를 기하는데 力써 闕里志, <闕里文獻考>, <聖廟圖>, <孔氏碑本> 등 孔子關係 문헌을 구입해 온 譯官에게는 施賞을 하기도 했다.⁽⁴⁰⁾

이를 다시 肅宗 16年(1690)의 紀行錄에서 보더라도 序班을 시켜서 구했다는 書目중에는 <呂東萊集, 性理諸家解, 天源發微, 朱子遺書, 胡子知言, 胡五峰集, 胡文定公集, 楊龜山集, 范文正公集> 등이 있고 序班輩를 시켜서 廣求했으나 終始 구하지 못했다는 書目中에는 <荊州稗編, 羅整庵集, 黃勉齋集, 柳州全集, 陽明全集, 于慎行集, 穀山漫錄, 穀山筆塵, 陳后山集, 陳簡齋集, 胡敬齋居仁集, 醫巫閭賀欽集> 등의 책이름이 보인다.⁽⁴¹⁾

(36) 上揭書, pp. 69—70.

(37)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 pp. 69—70.

(38) 鄭亨恩, 朝鮮時代書誌史研究, pp. 62—63.

(39) 光海君日記, 光海君 10年 8月, 朴尚均, “朝鮮社會의 圖書流通에 대한 考察,” p. 252. 再引用.

(40) 正祖實錄, 卷 44. 正祖 20年 3月 己未條, 「有譯官購闕里志闕里文獻考等書及聖廟圖孔氏碑本於燕中以來者 命賞加.」

(41) 紀行錄, 附記, 金聖七, “燕行小攷,” p. 51. 再引用.

이는 赴燕譯官들의 서적수입에 대한 몇몇 例에 지나지 않으나 이렇듯 譯官들이 私貿易 활동을 주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어상 장애가 없었기 때문이며 특히 清代에는 淸이 일어난 지 140여년간에 걸쳐 우리나라 조정의 士大夫들은 중국을 夷狄視하여 使行함을 부끄럽게 여겼으며 비록 할 수 없이 사행은 할지라도 그 文書나 言語의 거래는 通譯에게 맡겨 버렸기 때문이다. (淸興百四十餘年 我東士大夫 夷中國而恥之 雖罪他奉使 而其文書之去來 事情之虛實一切委之於譯官)⁽⁴²⁾

이렇듯 私貿易活動을 주관해 오던 赴燕 譯官들은 그 본래적 의미를 벗어나 對中 貿易의 상업적 주체로서 파악될 수 있으며 매 使行때 마다 譯官의 私易을 통하여 서적이 수집되었으며 그 수량은 막대했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宋版, 元版, 明版, 淸版등이 다 이들의 손을 거쳐 들어왔다.⁽⁴³⁾

한편 중국으로 사행한 사람들이 私用을 위해서 구입해 온 경우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私貿易에 해당되며⁽⁴⁴⁾ 수집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 士大夫들의 書籍 蒐集熱에 대한 記錄을 찾아보면 「姜紹書의 <韻石齋筆談>에 이르기를 “조선사람들은 가장 책을 좋아하여 두루 使臣이 올 때에는 50 내지 60명이 한하여 와서 혹은 舊傳 혹은 新書 혹은 稗官小說 등 저들의 책에서 빠진 것이 있으면 市中에 나아가 書目을 적어 사람들에게 두루 물어 비싼 값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도리어 저들의 나라에 異書의 藏本이 있다. …”⁽⁴⁵⁾

이처럼 일반 士大夫들의 中國書籍 蒐集熱은 일반적으로 매우 고조되어 있어 入燕使館에게 서적구입을 부탁하여 買來하여 오는 경우와 入燕使臣의 수행원으로 北京을 방문할 때 직접 구입해 오는 경우가 있었다.

(42) “燕岩集” 熱河日記 參照：朴齊家 “北學叢” “譯” “請與以來 國朝士大夫 以中國爲恥 雖僉逸本使 而一切事情·文書·言語之去來 悉委之於譯”，朴尚均，“朝鮮社會의 圖書流通에 대한 考察：開化期 「節居間」을 中心으로”，論文集(강남사회복지학교), 제8집(1983), p.247에서 再引用.
(43) 金東旭, “坊刻本에 대하여,” 東方學志, 제11집, 1970. p.101.

(44) 鄭亨愷, 朝鮮時代書誌史研究, p.70.

(45) 增補文獻備考, 卷 242. 藝文考, 歷代書籍條. 「姜紹書 韻石齋筆談曰 朝鮮國人最好書 凡使臣入買限五六百人 或舊典或新典或稗官小說 在彼所缺者日出市中 各寫書目逢人遍問不惜重直購回故俄國反有異書藏本也.」

당시 北京의 書肆는 유리기와와 벽돌을 굽는 공장이었던 琉璃廠에 많았다. 이에 대해 朴趾源은 “공장 바깥은 모두 점포로서 거기에는 재화와 보물이 넘치고 있다. 서점으로 큰 곳은 文粹堂, 五柳居, 先月樓, 鳴盛堂 등이다. 천하의 舉人和 知名의 인사들이 많이들 이 속에서 묵고 있다”(46)라고 하였고, 洪大容은 “廠은 정양문 밖 西南 5里 지점에 있는데, 창에 가까운 길 좌우는 시장점포로 되어 있다. 東西로 閭門을 세우고 琉璃廠이란 편액을 붙여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이름으로 되어 버렸다 한다.

市中에는 書籍과 碑版, 鼎彝, 골동품 등 모든 器玩雜物들이 많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를 보고 벼슬을 얻어 하기 위해 온 남방의 수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는 가끔 명사들이 끼어 있다.

책가게는 일곱이 있다. 삼면 벽으로 돌아가며 수십 층의 시렁을 달아매고 牙籤으로 秩을 질서정연하게 진열해 두었는데 각권마다 포지가 붙어있다. 한 점포 안의 책만 해도 수만권이나 되어 고개를 들고 한권 있으면 책이름을 다보기도 전에 눈이 먼저 핑돌아 찡찡해진다”(47)고 하였다. 이처럼 많은 서적과 器玩雜物 점포로 널리 알려진 琉璃廠은 文籍의 寶藏인 동시에 學者交驩의 매개소이기도 했다. (48)

사행에 참가한 수행원들은 琉璃廠의 여러 書肆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朝鮮에 稀有한 書籍과 絶無한 書籍名을 일일이 抄錄하거나 평생동안 구하려던 책과 천하의 기이한 모든 책들을 적은 書目을 얻어 가지고 오기도 했다. (49) 또 수행원들은 李德懋와 朴齊家가 書狀官 沈念祖의 부탁으로 朱彝尊의 <經解>와 馬輔의 <釋史> 등의 稀貴本 外 수십여 種의 책을 구입한 경우(50)나 그때의 首譯官이었던 李彥容이 「御製全韻詩」 4책을 구한 것(51)처럼 직접 구입

(46) 朴趾源, 燕巖日記, 黃圃紀略 琉璃廠, 「廠外皆塵鋪貨資滯溢, 杏冊鋪最大者曰文粹堂, 五柳居, 先月樓, 鳴盛堂, 天下舉人海內知名之士, 多寓是中。」

(47) 洪大容, 滌野書, 外集 9卷. 燕記, 琉璃廠, 「廠在正陽門外西南五里 而近廠夾道而爲市鋪東西設閭門扁曰琉璃廠 因以爲市號云. 市中書籍碑版鼎彝古蓋凡器玩雜物 爲商者多兩州秀才 應第求官者 故遊其市者往往有名士…書肆有七 三壁周設懸架爲十餘層, 牙籤整秩每套有標紙, 量一肆之書已不下數萬卷 仰面良久, 不能遍省其標號, 而眼已眩昏矣。」

(48) 藤塚郁, 潮朝文化東傳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昭和 50(1975) p. 20.

(49)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 67. 入燕記, 下, 散見.

(50) 上揭書, 5月 28日條.

(51) 同上, 6月 12日條.

하기도 했다.

朝鮮의 考證學을 발흥시킨 金正喜도 純祖 9年(1809) 10월에 冬至使 副使로 入燕하는 아버지인 金魯敬을 따라 北京에 들어가 翁方綱을 비롯한 阮元을 만나 考證하는 學問의 태도를 보고 돌아와 書信으로써 學問의 길을 탐지하였으며, 또 阮元이 보내준 皇清經解 1,400卷으로 清代의 漢學과 訓詁와 學人들의 實事求是에 대한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었으니⁽⁵²⁾ 私的 書籍寄贈의 결과라 하겠다.

이처럼 使行 조선선비들은 學者 交驩의 장소였던 琉璃廠을 중심으로 淸朝의 文人들과 筆談으로 交遊하여 英祖 41年(1765) 入燕한 洪大容과 金在行이 在燕中에 嚴誠, 潘庭筠, 陸飛 등과 국제적인 斷念之交를 맺은 美談도 있었다. 또한 淸人和 西人과의 問答을 통해 清代의 考證學과 西學의 도입을 가능하게 했으며 함께 北京에 있던 天主堂을 방문하여 天主教書籍 및 西洋科學機器를 기증받기도 하여 天主教의 傳來를 본격화시켰다.⁽⁵³⁾

또한 淸의 乾隆時期에는 明末 遺臣들의 著書나 淸朝를 비난하거나 비하시키는 글씨가 포함된 書籍은 禁書로 규정되어 있어 公公然한 購入이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행원들은 私私로운 회향도서를 구입하는데 은밀히 주력하였던 例를 正祖 2年 3月の 入燕使節인 書狀官 沈念祖가 明末 遺臣인 顧炎武의 <亭林集>을 구한 記錄, 즉 “좌우에서 일찌기 亭林 顧炎武의 耿介를 대단히 높이 여겨 明末의 제일가는 인물이라 하기에 五柳居 陶氏의 冊房에서 그의 文集을 구입하였는데 陶生은 오늘날 禁書가 3백여종이 있는데 <亭林集>도 그중의 하나이니 잘 秘藏하여 가지고 가라고 신신 당부하였소”⁽⁵⁴⁾라 한 것이던지, 李德懋가 역시 顧炎武의 著書인 <日知錄>을 苦心하여 구해 秘藏하여 읽은 후 筆寫하여 李崑九에게 보낸 글⁽⁵⁵⁾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52) 李相玉, 前揭論文, p. 56.

(53) 藤塚鄰, “李朝の學人と乾隆文化,” p. 13.

(54) 李德懋, 前揭書, 6月 21日條, 「左右嘗盛言 顧亭林炎武之耿介 爲明末之第一人物 購其集於五柳居陶生陶生以爲當今之禁書三百餘種 亭林集居其一 屢申托其秘藏歸來余於驛中。」

(55) 雅享遺稿, 卷六 24葉, 「日知錄 苦心求心 經營三年 今始緝人之秘藏讀之, ……誰復鈔此四冊 先爲持贈 賈玩如何」, 金聖七, “燕行小攷,” p. 52. 再引用.

使行員에 의한 중국서적의 私的 購入은 淸朝의 禁書까지도 구입해 가는 열성이 있는 반면에 서책무역을 빙자하여 私利를 탐하는 通事輩들의 싸구려 서적의 수집상도 엿볼 수 있다. 對中 書籍蒐集을 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거나 稀有한 것을 選別하여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國內에도 이미 많이 수입된 책들이 대부분이었다. 正祖 2년에 入燕한 李德懋는 五柳居 陶生의 冊房에서 60匣의 <經解>를 열람한 후 당시의 寶書樣相을 論評하기를 “經解, 이 책이 간행된 지 벌써 일백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마득히 모르므로 해마다 사신이 끊임없이 來往하였으나 수입하여 오는 책이라고는 고작 演義小說과 八家文抄 및 唐詩品彙 등이다. 이 두 종류의 책이 비록 실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책이라면 집집마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간행되는 것이니 다시 중국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책은 넓게 퍼져 있으므로 珍貴하지도 않고 값도 매우 저렴한 데 朝鮮使臣들은 을 때마다 별도로 돈을 준비해 와서 비싼 값으로 구입하니 우리나라 사람의 고루함이 이와 같다”(56)고 함에서 잘 살필 수 있다.

사행원들의 서적수집수준이 이처럼 낮았기 때문에 중국 書肆店에서도 朝鮮使臣에게 팔려고 이런 類의 서적들을 비치해 놓고 비싼 가격으로 팔기도 했다. 또한 이런 類의 서적들이 계속 많이 수입됨에 따라 雜書가 유행하고 또 稗官小品の 體를 모방하여 士習과 文風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동시에 實用的인 면에서도 무익하다는 이유로 正祖 16年 10月 冬至正使 朴宗岳에게 敎書를 내려 稗官小說을 비롯한 雜書뿐만 아니라 비록 經書나 史記類의 書籍이라 하더라도 唐板本은 구입하지 말도록 한때 嚴飭을 내리기도 했다.(57)

(56) 李德懋, 靑莊館全書, 6月 2日條, 「往五柳居陶生書坊, 檢閱經解六十套…此書刊行已百年而東方人漠然不知 每年使臣 冠蓋絡繹 而其所車輪東來者 只演義小說及八家文抄唐詩品彙等書此二種 雖曰實用 然家家有之 亦有本國刊行 則不必更購 中國則此二書亦廣布 不必珍貴 價亦甚低 但朝鮮使來時 必別爲儲匱 以高價賣之 東人之高價 類如是。」

(57) 正祖實錄, 卷 36, 正祖 16年 10月 甲申條, 「召見冬至正使朴宗岳 大司成金方行 上敎宗岳曰 昨日 出一策題 設問芻蕘之弊 而近來士趨漸下 文風日卑 雖以功令文字觀之 稗官小品之體 人皆效用…以予搨掃之苦心至意 至書發策之舉 而若能說其弊而未真實效 則亦何益哉 如欲拔本而塞源則莫如雜書之初不購來。」鄭亨恩, 朝鮮時代書誌史研究, p.183

이는 正祖의 朱子學 尊重思想이 직접적으로 서적수입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면에 使行員들의 신중하지 못한 서적수입의 양상도 엿볼 수 있다.

그리하여 사행일행이 回還・渡江時에 일일이 搜檢하여 혹시 軍官이나 譯官輩중에서 가지고 온 것이 적발되면 즉시 屬公케 함으로써 廣布되지 못하도록 하라고 까지 하였다.⁽⁵⁸⁾

그러나 正祖의 禁令措置가 내려진 후에도 赴燕譯官들의 使行時 혹은 使行路의 살엄한 搜檢 가운데서도 禁書의 密貿는 계속되었다. 특히 후기에 있어서 天主敎書籍을 비롯한 西洋과 朱子書 외의 雜書類는 事大使行의 密貿를 통해 流入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Ⅳ. 結 語

지금까지 朝鮮後期の 對中 書籍輸入政策에 대해 살펴 보았다. 당시 서적수입의 대상국으로는 先進文化를 형성한 중국만이 있었을 뿐이며, 수입정책 또한 양국간의 外交政策에 따라 수립되었다.

이로써 보면 중국문화를 도입하여 그에 따라 국가제도와 정치제도를 정비하고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던 朝鮮朝로서 中國書籍의 買入은 거의 필수적인 것으로 진지하게 수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후기의 書籍輸入은 일반 무역과 마찬가지로 事大使行에 수반되어 이루어졌으며 그 類型은 官貿易 賜予 私貿易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詳述하면 官貿易은 국가적인 書籍요구를 公的인 購入路를 통해서 충족시키는 합법적인 購入으로 使節使가 임금이나 조정의 부탁으로 하던지 스스로 국가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입하는 것이다. 賜予는 事大使行의 禮物인 朝貢의 餼贖이 있는 다음에 中國側의 답례로 내려지는 書冊의 기증이라 할 수 있다. 이

(58) 同上條, 「凡係府板者 切勿持來 還渡江時 一一搜檢 雖軍官譯員輩 如有帶來者 使即呈公于設館 俾無廣布之弊。」 鄭亨憲, 上揭書, p. 184.

는 공공연한 구애가 불가능한 流出禁止書인 史書類나 地圖類와 같은 書冊을 朝鮮에서 구하고자 할 때, 계속적인 奏請이 있는 다음에 賜予되는 것도 있어 別質라 할 수 있다. 私貿易은 사사로써 수행원들이 그들의 필요서적을 구입하는 것이다. 이에는 사절수행원들이 평소 그들의 희망서적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와 私利를 추구하기 위해 일반사대부들이 흔히 원하는 서적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私的 수입에서는 稗官雜書라는 이유로 禁令이 내려진 수입이 금지된 서적과 淸의 禁書까지도 은밀히 구입하는데 주력하여 密質의 性格을 띤 것도 있었다.

어떠한 구입형태이던 對中 서적수입에 있어 主 活動地는 北京의 琉璃廠으로 이를 통해 서적의 買入을 추진하고 朝鮮에 稀有한 서적을 書目중에서 초록하거나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琉璃廠은 學者 交驛의 장소로 韓中 學人들의 交流를 도모하여 朱子學만 존중하던 學風에서 벗어나 새로운 學風인 考證學, 西學, 新文體의 流入 등이 가능할 수 있었다.

서적수입정책은 사회문화와 典籍문화를 考究함에 있어서 우선적이며 광범하게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나 아직 初步에 지나지 않으며 補完해야 할 점이 많음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脚註로 대신함.

A Study on the Book Importation from China in the Latter Chosŏn Period.

Hea-young Kang

The study aims at book importation from China in the Latter Chosŏn Period. It chiefly achieved to concomitant with an envoy of a trimming policy. The pattern of book importations divided into public trade, private trade, Royal gift.

Beyond the main stream of imports were Neo-Confucian books, a bibliographical study of Chinese classics books (考證學書) and Paegwan fictions (fictional narratives of oral natures compiled by local officials: 稗官小說) including Sŏ-hag (西學) books that were at that time in the fashion were introduced into Korea.

Like this, several pattern of book importation had an important effect upon closed Chosŏn society.